

202.17 호

행 정 명 령

**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**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이제 행정부법 2-B조의 제29-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난 비상 상황 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지시를 발행합니다.

- 비조치 의견서 또는 미제출 의견서 발행과 관련한 집행 명령 202.16에 포함된 지시문은 이러한 의견서가 법무장관에 의해 발행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.
-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발효되며, 만 2세 이상의 의학적으로 얼굴 덮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합니다.

2020년 4월 15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